

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·검사업무 지침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·검사업무 지침」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 재설정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·검사업무 지침 일부개정안

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·검사업무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2022년 10월 28일”을 “2025년 10월 28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유효기간) 이 지침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2년 10월 28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	제20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0월 28일</u> ----- --.